

● 제27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지방의원 의정활동 홍보 예산 편성 및 우편요금 감액
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6. 12. 7.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김동욱 의원 외 11명 발의 】

의안번호 1522

I. 건의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김동욱 의원 외 11명
- 나. 제안일 : 2016. 11. 11.
- 다. 회부일 : 2016. 11. 1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의정활동 홍보자료를 선거구민에게 제작·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에게만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과 발송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고,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정보고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도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의원도 국회의원과 같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정치인이고, 특히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및 발송 비용을 자체 예산에 편성·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보고서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건의안의 취지

- 본 건의안은 지방의원의 경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자료(이하 “의정보고서”) 발간 및 발송에 필요한 지방의회 차원의 별도 예산 편성이 불가하고, 의정보고서 발송 우편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정보고서 발간·발송 예산 편성과 우편요금 감

면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음.

2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정보고서 발간·발송 예산 지원 현황

- 국회는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의정자료 발간비’ 및 ‘정책자료발송료’를 편성해 의정보고서 발간과 발송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표 1>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발간·발송 관련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안)	증감	비고
계	5,273	5,309	36	2017년 기준 지역구 국회의원(253명) 1인당 1,857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47명) 1인당 300만원
의정자료 발간비	3,900	3,900	-	
정책자료 발송료	1,373	1,409	36	

- 또한 「우편법」 제2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 마목에 따라 연간 3회 범위에서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을 감면(일반 우편요금의 67% 감액) 해주고 있음.
- 이에 비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9가지 의정활동 소요경비 외에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원 의정보고서 발간·발송 예산을 새로 편성할 수 없고, 우편요금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음.

<표 2> 의회비 9가지 유형

1. 의정활동비	4. 의원국외여비	7.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 월정수당	5. 의정운영공통경비	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3. 의원국내여비	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9. 의원국민건강부담금

-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의원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의정보고서 발간·발송을 제한받고 있고, 지역 주민은 선거구민으로서 정당한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3 건의안의 타당성 검토

- 「공직선거법」 제111조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보고회, 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의 매체를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지방의원 역시 지역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해야 할 의무와 필요성이 국회의원과 다르지 않음.

-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조차 자신의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파악함으로써 선거 전후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나아가 ‘주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의원의 의정보고서 발간·발송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지방의원은 매체를 통해 노출되는 정도가 국회의원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의정보고서 발간·발송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현행법령은 유독 지방의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제시해 우편요금 감면을 포함한 의정보고서 발간·발송 전반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방의원의 다양한 의정활동이 지역 주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의원은 직업정치인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성과 상황을 반영해 입법 활동을 하며,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힘쓰는 등 정치활동의 질과 양에 있어 국회의원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음.
 - 오히려 지방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에 비해 지역 주민의 세세한 각종 민원과 행정적 수요를 해결해야 하는 위치에 있고, 일부 광역의원은 국회의원보다 많은 선거구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원 의정활동의 질량(質量)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은 정치 후원회 조직 등을 통한 정치자금 지원도 금지된 채,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등으로만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의 활동 전반을 해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
- 따라서 본 건의안에서 지방의원의 의정보고서 발간·발송 예산 편성 및 우편요금 감면과 관련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지방의원이 처해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강한 결의로 받아들여져야 함.
- 이상을 종합하면, 지방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제작 시 필요한 발간·발송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지방의원의 의정보고서 발송 시 소요되는 우편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것 역시, 의정보고서 제작과 관련해 재정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방의원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임.
- 아울러 현재 지방의원의 각종 활동비 및 정치자금 지원을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있는 것은, 이미 직업정치인으로서 지역 전반을 살피고 있는 지방의원을 바라보는 불합리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서 비롯된바, 이를 타파하고자 제안된 본 건의안은 충분한 시의성을 가진다고 판단됨.

참고법령

□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行政區域 또는 選舉區域의 변경으로 새로 編入된 區域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이하 ②~⑤ 생략

□ 「우편법」

제26조의2(요금등의 감액)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편 이용의 편의와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다량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요금등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 수량, 취급 요건 및 감액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우편요금등의 감액대상우편물)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요금등(이하 "우편요금등"이라 한다)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우편물

가.~라. 생략

마.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당해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간 3회의 범위에서 감액기준 수량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바.~아. 생략

이하 2호 생략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중 의회비 관련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200	205 의회비	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9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 2.~4. 생략	